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09
----------	-----------

제안년월일 : 2019년 3월 6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르면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구분과 구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명 수정
- 서울식물원의 집중 관리구역에 입장료를 부과하도록 수정

2. 주요 골자

- 제12조제3호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표기된 것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건축법 시행령」으로 수정
- [별표 1] 공원입장료 부과시설에 서울식물원을 추가하고, 어른 5천원~1만원, 청소년 4천원~7천원, 어린이 3천원~5천원으로 요금의 범위를 지정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3호 중 “「건축법」 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안 제20조제2항제2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 다만, 서울대공원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에 공원입장료를 받는 시설에 “서울식물원”을 추가하고, 요금받는 구간은 “온실 및 주제정원”으로 한다. 요금은 어른 1회 5,000~10,000원, 청소년 1회 3,000~7,000원, 어린이 1회 2,000~5,000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2조(녹지점용허가의 세 부기준) 법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 기 준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 ---- 「건축법」 시행령 제15 조제5항제3호 ----- -----.</p>	<p>제12조(녹지점용허가의 세 부기준)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제12조(녹지점용허가의 세 부기준) ----- ----- -----.</p> <p>1. ~ 2. (개정안과 같음)</p> <p>3. ----- ---- 「건축법시행령」 제15 조제5항제3호 ----- -----.</p>
<p>제20조(요금의 감면)</p> <p>① (생략)</p> <p>1. ~ 7.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 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 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p> <p>3. ~ 4. (생략)</p> <p>③ (생략)</p>	<p>제20조(요금의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0조(요금의 감면)</p> <p>① (개정안과 같음)</p> <p>1. ~ 7.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다 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 족 다만, 서울대공원은 경기 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 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 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포 함 한다</p> <p>3. ~ 4.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 1〕 공원입장료(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1〕 공원입장료(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1〕 공원입장료(제15조제1항 관련)			
			(현행과 같음)						
공원별	사용기준	금액(원)	공원별	사용기준	금액(원)	공원별	사용기준	금액(원)	
서울대공원	동물원	어른 1회	3,000~6,000	동물원	어른 1회	3,000~6,000	서울대공원	어른 1회	3,000~6,000
		청소년 1회	2,000~4,000		청소년 1회	2,000~4,000		청소년 1회	2,000~4,000
		어린이 1회	1,000~2,000		어린이 1회	1,000~2,000		어린이 1회	1,000~2,000
	테마가든 (어린이 동물원 및 장미원)	어른 1회당	2,000~4,000	테마가든 (어린이 동물원 및 장미원)	어른 1회당	2,000~4,000	서울대공원	어른 1회당	2,000~4,000
		청소년 1회당	1,500~3,000		청소년 1회당	1,500~3,000		청소년 1회당	1,500~3,000
		어린이 1회당	1,000~2,000		어린이 1회당	1,000~2,000		어린이 1회당	1,000~2,000
			서울식물원	어른 1회	5,000~10,000	서울식물원	어른 1회	5,000~10,000	
				청소년 1회	3,000~7,000		청소년 1회	3,000~7,000	
				어린이 1회	2,000~5,000		어린이 1회	2,000~5,000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건축법」 시행령”을 “「건축법시행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 다만, 서울대공원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포함 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에 공원입장료를 받는 시설에 “서울식물원”을 추가하고, 요금받는 구간은 “온실 및 주제정원”으로 한다. 요금은 어른 1회 5,000~10,000원, 청소년 1회 3,000~7,000원, 어린이 1회 2,000~5,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3호 -----.</p> <p>제20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p> <p>6. ~ 7. (생략)</p> <p><신 설></p> <p>②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p> <p>③ (생략)</p>	<p>제12조(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 제3호 -----.</p> <p>제20조(요금의 감면) ①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p> <p>6. ~ 7. (현행과 같음)</p> <p>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p> <p>②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 다만, 서울대공원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포함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원입장료(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1] 공원입장료(제15조제1항 관련)

공 원 별		사 용 기 준	금 액 (원)
서 울 대 공 원	동 물 원	어 른 1회	3,000~6,000
		청 소 년 1회	2,000~4,000
		어 린 이 1회	1,000~2,000
	테 마 가 든 (어 린 이 동 물 원 및 장 미 원)	어 른 1회 당	2,000~4,000
		청 소 년 1회 당	1,500~3,000
		어 린 이 1회 당	1,000~2,000

공 원 별		사 용 기 준	금 액 (원)
서 울 대 공 원	동 물 원	어 른 1회	3,000~6,000
		청 소 년 1회	2,000~4,000
		어 린 이 1회	1,000~2,000
서 울 대 공 원	테 마 가 든 (어 린 이 동 물 원 및 장 미 원)	어 른 1회 당	2,000~4,000
		청 소 년 1회 당	1,500~3,000
		어 린 이 1회 당	1,000~2,000
서 울 식 물 원	온 실 및 주 제 정 원	어 른 1회 청 소 년 1회 어 린 이 1회	5,000~10,000 3,000~7,000 2,000~5,000